

서서울CC 정회원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클럽은 서서울컨트리클럽(이하 “클럽”이라한다.)이라 하며 그 영문 명칭은 SEOSEOUL COUNTRY CLUB으로 한다.

제2조 목 적

본 클럽은 호반서서울 주식회사가 소유 경영하는 골프장 및 골프와 관련된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스포츠를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국민체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클럽의 사무소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324에 두고 필요한 장소에 연락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4조 회 원

본(本)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1) 명예회원
- 2) 특별회원
- 3) 정회원(개인) 및 법인회원
- 4) 외국인회원 및 해외회원
- 5) 년회원
- 6) 가족회원
- 7) 기타회원

제5조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국가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가 추대한 자로 한다.

제6조 특별회원

- 1) 특별회원은 본 클럽과 골프계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가 그 자격을 부여한 자로 한다.
- 2) 특별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서만 회원의 예우를 받는다.

제7조 정회원

- 1) 정회원은 개인회원 또는 법인회원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2) 법인회원은 2구좌를 원칙으로 하며 구좌수에 따른 이용자를 기명식으로 한다.

제8조 외국인회원 및 해외회원

외국인회원 및 해외회원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본적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입회를 승인한 자로 한다.

제9조 기타회원

- 1) 년회원 및 가족회원 기타회원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로 정한다.
- 2) 입회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는 회사가 정한다.
- 3) 가족회원
 - ① 1차,2차 정회원모집 시 개인회원에 의해 지명된 직계가족 1인에 한한다.
 - ② 가족회원은 예약권이 없으며 주중에 한하여 입장료에 대하여 회원 대우를 받는다. 단, 회원탈회(반환, 증여, 양도양수 등) 시에 신규회원이 된 정회원은 가족회원을 둘 수 없다.

제3장 회원운영 및 관리

제10조 입회

본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하며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단, 이 경우 “승인”이란 회원이 입회금 납입 및 회칙에서 미리 정한 자격 제한 해당 여부 등 절차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제11조 입회금

- 1) 입회금은 정회원 및 외국인 해외회원의 입회보증금으로써 탈회 시 원금만 반환한다.
- 2) 기타회원의 입회금은 별도로 정한다.
- 3) 외국인회원 및 해외 회원의 입회금은 원화로 표시한다.
- 4) 다음의 사유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퇴회 신청 시 입회금을 반환한다.
 - ①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폭우, 강풍, 및 폭설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장기간 영업을 중지되거나 개장이 지연 될 시는 예외로 한다.
 - ② 회원이 장애인 복지 법 시행규칙에 의한 3급 이상의 장애를 당하여 경기가 불가능 할 시.
 - ③ 회원이 시설이용에 6개월 이상 부당하게 거절 당할 시.
 - ④ 회사의 목적 사업을 변경하여 골프장을 폐쇄 할 시.

제12조 시설이용 및 회비

- 1) 회원은 본 클럽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 시 회사가 정한 소정의 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클럽 이용약관에 따른다.

2) 본 클럽의 정회원이 회원 요금으로 예약 가능한 횟수는 회원권 약정에 따르며, 횟수를 초과한 예약의 경우 별도 공지된 요금으로 적용한다.

제13조 이용의 제한

천재지변, 국가사회의 현저한 변화, 전쟁, 파업, 전염병, 회원의 안전에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및 행정기관에 의한 제한, 대회 또는 행사의 실시, 골프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자격의 제한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징계규정에 의거 제명, 또는 일정기간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1)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속적 의무를 위반하는 등 클럽의 안정적 운영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통념상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2) 회비, 기타의 납입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치 않았을 경우.
- 3) 관계법령 위반에 준하는 본 회칙 및 클럽의 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4) 성추행, 폭력 및 폭언, 고성방가, 상해, 질서문란, 명예훼손 등 그에 준하는 영업방해 행위 및 회사의 명예·신용 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회사로부터 시정 요구를 2회 이상 받았음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5) 특별한 이유 없이 연간 2회 이상 당사의 예약 및 위약안내를 위반하여 다른 회원들의 예약 기회권을 박탈하고 고의적으로 허위의 예약을 진행하고 이를 취소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여 회사로부터 시정 요구를 2회 이상 받았음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한 경우

제15조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회원자격의 양도
- 2) 퇴회
- 3) 제명
- 4) 법인회원의 경우 법인의 해산
- 5) 회원사망
- 6) 회원이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제명될 때에는 그 결정일

제16조 회원권의 양도

- 1) 정회원의 자격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양도 할 수 있다.
- 2) 회원권의 양도, 법인이용자 명의변경 등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클럽에서 정한 금액을 개서료로 징수 할 수 있다.

제17조 퇴회

- 1) 정회원 및 외국인회원, 해외회원은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회원의 탈회 요청에 따라 탈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 양수에 의하여 새로 회원이 된 자는 입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 2) 퇴회하고자 할 때에는 퇴회 신청서와 회원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상이 없을 시 탈회 할 수 있다.
- 단, 이 경우 “승인”이란 회칙에서 정한 입회금 반환 요건 해당 여부 등 절차 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제18조 회원의 관리

- 1) 회원 명부에는 회원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에는 구성원해당사항 및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직장,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 2) 회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 골프 클럽은 회원 변동사항을 관할시장에 보고할 수 있다
- 3) 회원은 주소 기타 신상에 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본 클럽 홈페이지 또는 당 클럽 회원 관리부서에 즉시 수정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회원의 권리

- 1) 회원은 회사가 경영하는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회사가 정한 회원의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 2) 정회원은 본 클럽이 개최하는 회원을 위한 대회와 행사에 참가 할 수 있다.

제20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용시간을 예약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골프장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각종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3) 회원은 골프장과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 4) 회원은 회원 및 회원의 동반자가 시설물 파손, 부대시설 손상시 배상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제21조 이사회

- 1) 본 클럽의 이사회라 함은 호반서서울 주식회사 이사회를 말하며 그 결의 기타사항에 관하여는 회사의 정관에 따른다.
- 2)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어 상정되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22조 운영위원회

- 1) 본 클럽은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2) 운영위원회는 보조기구로써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규정에 의한다.

